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가단508021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17. 8. 8.

판결 선고2017. 8. 2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13,582,072원 및 이 중 113,089,922원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2017. 5.

20.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B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가.항의 금원 중 113,089,9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2017. 5.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사박원규

별지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와 중첩관계에 있음은 원고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소장 기재 청구취지 제1. 나.항의 "113,089,922원"을 "위 가.항의 금원 중 113,089,922원"으로 본다.